

인천지방법원 2023. 5. 17 선고 2022가단1520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15 선고 2023나65658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3. 5. 17 선고 2022가단15204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진

변 론 종 결 2023. 4. 19.

판 결 선 고 2023. 5. 17.

주문

-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,151,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인천 동구 E 대 1,277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484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망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21. 10. 20.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2021. 11. 11. 소외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이하 ‘소외 조합’이라 한다)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중 위 484분의 14 지분에 관한 소유자였던 망인은 1995. 11. 3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.

다.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위 484분의 14 지분을 수용하면서 2021. 10. 19.경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4,570,060원을 공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15,151,500원(= 45,500,000원 × 상속지분 1/3)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1) 망인은 약 40년 전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이 소유하던 위 484분의 14 지분(이하 ‘이 사건 토지 지분’이라 한다)을 소외 망 H에게 매도하였고, 원고는 망 H으로부터 1988. 11. 8.경 이 사건 토지

지분을 매매대금 6,000,000원에 매수하였다.

2)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,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 2022년 말경 이 사건 토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였다.

3)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34년 동안 점유 사용하였으므로,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.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소외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 공탁받은 보상금 45,500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외 망 H에게 매도하였고, 원고가 망 H으로부터 1988. 11. 8.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, ②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 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,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범진